

우수골프선수 장학금 지급 계획

2024. 3.15. 대한골프협회

I 사업개요

□ 추진배경 및 목적

- 전북특별자치도골프협회 이영국 회장의 “우수선수 장학금 출연(‘22. 4.13.)”
- 골프에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 학생선수의 역량 발전 기여

□ 사업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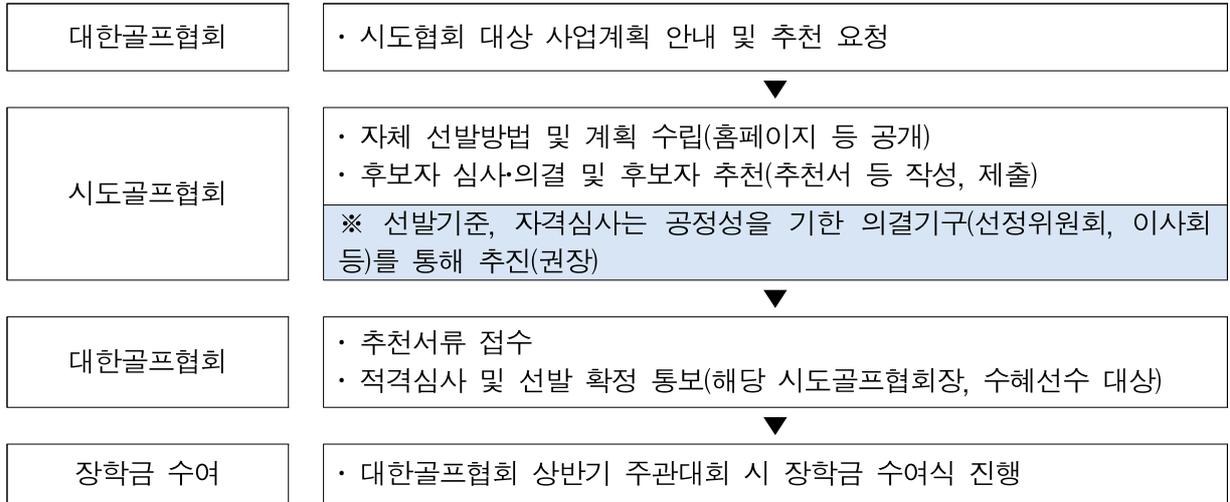
- 사업명: 우수골프선수 장학금 지원
- 지원대상: 17개 시도골프협회장이 추천한 초·중·고 학생선수
- 지원내용: 1인당 100만 원 장학금 지급
- 지원방식: 개인별 계좌 입금
- 시행: 2023년 12월~2024년 6월
- 지원금액: 3,400만 원

II 추진계획

□ 선발 개요

- 선발인원: 34명(시·도협회별 초·중·고 학생선수 중 남녀 각 1명)
- 선발자격: 해당 시도협회에서 정한 선발기준을 근거로 하여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골프선수로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

○ 선발체계:



□ 선발 방법

○ 선발기준: 해당 시도협회에서 결정(선정위원회 구성 또는 이사회 등 의결 필요-선발 공정성 제고)

*우리 협회에 추천 시 선발 근거 및 의결 회의록 등 증빙자료 제출

○ 추천인원: 단체당 2명(소속 초·중·고 학생선수 중 남녀별 각 1명)

추천 충족요건	①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② 최근 3년 이상 골프 종목에 등록된 선수(2024년 등록 必) ③ 학교폭력 가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학생 (정학·퇴학 등 징계를 받았거나,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 제4호~제6호, 제8호~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 불가)
공통적용	① 선발기준: 대회 기록, 획득점수 등에 의해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, 저학년 우선선발(학년이 같은 경우 생년월일 적용) ② 체육단체/기관 등에서 장학금을 중복수혜 받는 경우 가급적 배제 권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참고>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」</p> <p>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·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(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,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. 사회봉사 5. 학내외 전문가,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. 출석정지 8. 전학 9. 퇴학처분 	